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058 호】

2014년 03월 18일 (화)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규 칙

고양시 규칙 제893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1
고양시 규칙 제894호	고양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110

훈 령

고양시 훈령 제30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112
--------------	--------------------------	-----

입 법 예 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13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31
--------------------	----------------------------------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84호	도로명주소 고시	151
고양시 고시 제2014-85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155
고양시 고시 제2014-86호	고양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세부운용지침 중 개정지침	157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4-4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62호선)사업 실시 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158
-------------------	---	-----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4-125호

신조 공인 공고

163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3월 18일

고양시 규칙 제893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 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의 연장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

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별지 제5호서식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

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

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 · 7급 · 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 · 8급 · 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 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7] 및 [별표 8] 과 같다. 다만, 고양시장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임용

제21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의 경우는 시·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9]와 같다.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과 같다.

제29조(시·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본청·구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구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하고, 구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구 및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시·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인적자원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팀 장 직위·성명	인적자원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문 식 031-8075-2386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신규 임용 시험	승진 시험	비고
1	재직증명서 1부		○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한함
2	최종학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3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5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서 또는 취업지원대 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6	학교생활기록관계 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에 한함
7	시험요구서 1부		○	
8	이력서 1부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한함
9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10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전체이력기재)	○		시·구·읍·면·동장 발행
11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12	장애인 복지카드, 장 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장애인구분모집 응시 대상자에 한함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관련)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지연구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임업조경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직렬 / 직류		연구관·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물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인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인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관련)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 공한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 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 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 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 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 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1항 관련)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부터 2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6급까지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부터 6급까지

계급 직렬 / 직류		5급 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 리	조 리		조리사1급	조리사 1급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신규임
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7조제3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 이상, 3급 : 8년 이상, 4급 : 4년 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정	운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조선	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 검사	산업기사 : 식품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 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 설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방송통신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직렬 \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 의사(2) 치과 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선동위원소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3)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1급
조리	조리			조리사1급(4)	조리사1급(2)	조리사1급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6의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6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급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
표(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학	기술사(화학,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학,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7)
	농 공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조 경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수의연구	수 의	기사(축산) 수의사(7)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 의사(2) 수의사(7)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공중보건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 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렬	직류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0조제2항 관련)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행정	운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업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전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기능장(전자기기)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차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야 급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 설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 설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 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 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 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 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 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 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 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 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 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 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 진동, 폐기물처 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 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 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 진 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 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 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 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관리사	
	조	종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사	자가용 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교통, 지질및지반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조리사1급	조리사 1급
운전	운전				제1종 운전면허(보통) 제2종 운전면허(보통)

비 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9]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5조제1항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 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 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 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 다군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10]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5조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임상심리사2 급	물류관리사, 철도교 통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
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 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1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5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공 업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 철도 교통 안전 관리사

공 업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잡 업	기 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 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B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가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환경	수질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대기	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산림 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 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방송통신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통신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	전자통신기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계 농업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판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업연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염색 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화 학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 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벼짓중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	원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2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방 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수 의사, 방사성동 위 원 소 취 급 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 : 가축인공수 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 을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 재료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 능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의 사, 한의사, 치 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 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 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 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 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 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2]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6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감 정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준 위 위 사	상 중 사 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강 임 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박사학위 소지 후 10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 고 : 1. 윗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6조제4항 관련)

1. 연구직 및 지도직 외의 기술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해양
	일반수산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축 지	토목(토목건설)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계통(수의학포함) 식품가공, 농가정,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주생활
어 촌 지 도	수산, 해양

[별표 14]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5]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6]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0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기 계 운 전
	전 기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야 금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 업 환 경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 촌 지 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식 물 검 역	
	농 업 경 영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잠 업 곤 충	농 업
	농 촌 지 도		
	원 예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 촌 지 도	농 업
			원 예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사회
		농촌지도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축산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업경영	임업	전직류
		농촌지도	임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수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해양수산	수산중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로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해양수산	수산제조
		어촌지도	수산물검사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학	약무	약무
			약제
	공중보건	보건	보건
환경연구	환경	환경	전직류
			환경
시설연구	토목	시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건축

2. 지도직공무원

지 직	도 직	직	기 술	직
직	직	직	직	직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농 업 경 영	
			원 예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녹 지	전 직 류	
		녹 지 연 구	임 업	
	잠 업	농 업	조 경	
		농 업 연 구	잠 업	
	원 예	농 업 연 구	잠 업 곤 충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기 계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수 산 제 조	
			수 산 중 식	
			어 로	
		해 양 수 산 연 구	수 산 물 검 사	
			전 직 류	

[별표 1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제25조제 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 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8]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25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이하
일 반 직 공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	경 정	경 감·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시간 선택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별표 19]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7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 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 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 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 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 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 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 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 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 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 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 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 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 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 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 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 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 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 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 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 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 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 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 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 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 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 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 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 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 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 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 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 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작용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작용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작용용, 열관리)
공 (금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업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즈,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가 업 공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업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업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 건 진 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 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축,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계,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작용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작용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 업 연 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 업 연 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 업 연 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 업 연 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 지 연 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 산 연 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계급 직렬	연구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지(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도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별표 20] 겸임예정직급 기준표(제28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 도 관	3 급 · 연구관· 지 도 관	4 급 · 연구관· 지 도 관	5 급 · 연구관· 지 도 관	6 급 · 연구사· 지 도 사	7 급 · 연구사· 지 도 사	8 급	9 급
교육 공 무 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 교 및 동부설연 구소의 교원 포 함)	교 수	교 수 부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조 교 수 전임강사 (2년 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6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2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1 호 봉 이 하 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		이 사 (3년 이상)	이 사	부 장	과 장 (차 장)	계 장 (대리)	평 사 원 (3년 이상)	평 사 원	

[별지 제1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 급 직					⑥ 응시연도 및 횟수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년도 제 회 기 호 번	
① 성 명 한 글 (한문)		② 생 년 월 일 년 월 일(세) ③ 주민등록번호		④ 성 별 남 ☐ 여 ☐		⑤ 희망지역 제1희망 제2희망		※ 등록심사 사진대조 (인) 서류심사 (인)			
⑦ 현주소	(우) ☎ () - E-mail : 휴대폰 :							반명함판 사진 (3.5cm×4.5cm)			
⑧ 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년 월 일 제대연월일 : 년 월 일									
미필사유											
⑨ 학 력											
부 터		까 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⑩ 자격면허					⑪ 상 별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사 항				
⑫ 특 기		⑬ 취 미			⑭ 운 동		⑮ 종 교				
⑯ 경 력											
부 터		까 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⑰ 재 산 상 황 가. 부동산 (m²) 나. 동 산 (원)

⑱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⑲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최 종 학 력	비 고

첨부서류	주민등록 초 본	기 본 증명서	최종학력 증 명 서	경 력 증명서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1. 신 원 2. 진술서	채용신체 검 사 서
통 수	통	통	통	통	통	통	통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 원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

⑳ 우 무 인	
------------------	--

임 용 후 보 자 등 록 요 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초본 1통
-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관계증명서 1통
- (7) 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 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부
-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통

이상 구비서류는 등록원서와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 착한다.(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통에 현직 근무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반드시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타자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고유명사 그 밖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에 있어서는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기재하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한글과 한자를 명기한다
- ② 생 년 월 일……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 ③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④ 성 별……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 ⑤ 회 망 지 역……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⑥ 시험합격구분……(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⑦ 주 소……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통, 반까지 기재한다.
- ⑧ 병 역……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영장미교부, 징집연기증,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재한다.
- ⑨ 학 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연수를 기입한다.
- ⑩ 자 격, 면 허……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⑪ 상 별……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⑫ 경 력……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⑬ 재 산 상 황……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m²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 ⑭ 가 족 상 황……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 ⑮ 우 무 인……오른쪽 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끝.

파
호
라
피
하
요
응

- 81 -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 첨 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발 신 기 관 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용연월일	임용직급	임용직위	비 고

0202 - 1 - 9A 1969. 12. 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0202 - 1 - 11A 1969. 12. 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실 무 수 습 계 획 서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시험구분	()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학 력		경 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기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 직 부 여
	년 월 일		년 월 일 월 간	월	일자 : 직위 :	년 월 일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치부서					
	수습 계획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실지 수습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제 회 ○○○○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1.~3. (생략) 4. <u>의사</u> 5. (생략) ② (생략) 1. <u>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u> 2. <u>근속승진 임용</u> 3. <u>명예퇴직 심의(수당지급 및 특별승진 등)</u> 4. <u>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기간 연장</u> 5. <u>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u> 6. <u>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u> 나. <u>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및 면접 시행계획</u> 다. <u>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u> 7. <u>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u>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 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삭 제></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u> 2. <u>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u> 3. <u>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u> 4. <u>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u> 5. <u>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u> 6. <u>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u> 7. <u>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생략)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차 시험에
제7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64조에 따라 1.~2. (현행과 같음) 3. 8급 및 9급공무원의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③ (생략) 제9조(응시연령) (생략) 1. <u>일반직 채용시험</u> 가. <u>7급 이상 : 20세 이상</u> 나. <u>8급 이하 : 18세 이상</u> 2. <u>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u> 제12조(시험위원) ① (생략)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u>3명</u>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u>2분의 1</u>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u>민간인으로</u> 하여야 한다. 제14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④ (생략)	1. <u>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u> 2. <u>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u> 3. <u>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u>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응시연령) (현행과 같음) 1. <u>7급 이상 : 20세 이상</u> 2. <u>8급 이하 : 18세 이상</u> 제11조(시험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5명</u>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u>2명</u>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u>3분의 1</u><u>민간 전문가로</u>.....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삭 제> ①~③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15조(서류전형 기준) <u><신 설></u> ①~② (생략)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 다 군을 포함한다)..... ②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현행	개정안
<단서 신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	①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illegible]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u><신설></u> <u><신설></u>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생략)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7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생략)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②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현행과 같음) 1.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④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u><삭 제></u>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다만, 고양시장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과 같다. 제31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②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일반직공무원으로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삭 제>

현행					개정안				
[별 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8조제1항관련)					[별 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1항관련)				
직렬\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					...		
사서	사서	(생략)			사서	사서	(현행과 같음)		
<신 설>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의	수의	(생략)			수의	수의	(현행과 같음)		
		...					...		
시설	지적	(생략)			시설	지적	(현행과 같음)		
<신 설>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간호 조무	간호조 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생략)					비고(현행과 같음)				
<신 설>					[별 표 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제17조제3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table><tr><th>계급</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td><td>기술사</td><td>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td><td>기사(3년), 산업기사(6년)</td><td>기사, 산업기사(3년)</td><td>산업기사</td></tr></table> 2. 기능직공무원 <table><tr><th>임용예정계급</th><th>기능 5급</th><th>기능 6급</th><th>기능 7급</th><th>기능 8급</th><th>기능 9급</th></tr><tr><td>자격증의 등급 및 경력기준</td><td>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td><td>기사(2년), 산업기사(4년)</td><td>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 픽 입상자(2년)</td><td>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 픽 입상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2년)</td><td>기능사, 전국기능대회 입상자</td></tr></table> 비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 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 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의2.~6. (생략)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임용예정계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경력기준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 픽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 픽 입상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2년)	기능사,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별표 5]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table><tr><th>계급</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td><td>기술사</td><td>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td><td>기사(3년), 산업기사(6년)</td><td>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td><td>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td></tr></table> <삭 제> 비고 1.....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6. (현행과 같음)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임용예정계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경력기준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 픽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 픽 입상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2년)	기능사,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현행	개정안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table><tr><td>직렬</td><td>직류</td><td>대상 자격증</td></tr><tr><td></td><td></td><td>...</td></tr><tr><td>방송통신</td><td></td><td>(생략)</td></tr><tr><td>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td><td></td><td>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 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td></tr></table>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 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table><tr><td>직렬</td><td>계급 직류</td><td>5급</td><td>6급</td><td>7급</td><td>8급</td><td>9급</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시설</td><td></td><td colspan="5">(생략)</td></tr><tr><td colspan="7"> <신 설> </td></tr></table>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 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table><tr><td>직렬</td><td>계급 직류</td><td>기능6급</td><td>기능7급</td><td>기능8급</td><td>기능9·10급</td></tr><tr><td>전기</td><td>전기</td><td>(생략)</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4">사무보조</td><td>워드</td><td>(생략)</td><td></td><td></td><td></td></tr><tr><td>필기</td><td></td><td></td><td></td><td></td></tr><tr><td>계리</td><td></td><td></td><td></td><td></td></tr><tr><td>사서</td><td></td><td></td><td></td><td></td></tr></table>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	방송통신		(생략)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 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					시설		(생략)					<신 설>							직렬	계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기	전기	(생략)						...				사무보조	워드	(생략)				필기					계리					사서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table><tr><td>직렬</td><td>직류</td><td>대상 자격증</td></tr><tr><td></td><td></td><td>...</td></tr><tr><td>방송통신</td><td></td><td>(현행과 같음)</td></tr><tr><td colspan="3"> <삭 제> </td></tr></table>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table><tr><td>직렬</td><td>계급 직류</td><td>5급</td><td>6급</td><td>7급</td><td>8급</td><td>9급</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시설</td><td></td><td colspan="5">(현행과 같음)</td></tr><tr><td>속기</td><td>속기</td><td></td><td></td><td>한글속기 1·2급(5)</td><td>한글속기 1·2급(2)</td><td>한글속기 1·2·3급</td></tr><tr><td rowspan="2">위생</td><td>위생</td><td></td><td></td><td>위생사(5), 영양사(5)</td><td>위생사(2), 영양사(2)</td><td>위생사, 영양사</td></tr><tr><td>사역</td><td></td><td></td><td>영양사(5)</td><td>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td><td>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td></tr><tr><td>조리</td><td>조리</td><td></td><td></td><td>조리사 1급(4)</td><td>조리사 1급(2)</td><td>조리사 1급</td></tr><tr><td>간호 조무</td><td>간호 조무</td><td></td><td></td><td></td><td></td><td>간호조무사</td></tr><tr><td>운전</td><td>운전</td><td></td><td></td><td></td><td></td><td>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td></tr></table> <삭 제> <삭 제>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	방송통신		(현행과 같음)	<삭 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					시설		(현행과 같음)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급(2)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																																																																																																																																																								
방송통신		(생략)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 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																																																																																																																																																								
시설		(생략)																																																																																																																																																								
<신 설>																																																																																																																																																										
직렬	계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기	전기	(생략)																																																																																																																																																								
		...																																																																																																																																																								
사무보조	워드	(생략)																																																																																																																																																								
	필기																																																																																																																																																									
	계리																																																																																																																																																									
	사서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																																																																																																																																																								
방송통신		(현행과 같음)																																																																																																																																																								
<삭 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																																																																																																																																																								
시설		(현행과 같음)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급(2)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 6의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6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table><tr><th>종류</th><th>임용 등급</th><th>자격기준</th></tr><tr><td rowspan="5">시간 선택제 임기제</td><td>가급</td><td>「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td></tr><tr><td>나급</td><td>「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td></tr><tr><td>다급</td><td>「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td></tr><tr><td>라급</td><td>「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td></tr><tr><td>마급</td><td>「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td></tr><tr><td rowspan="5">한시 임기제</td><td>5호</td><td>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td></tr><tr><td>6호</td><td>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td></tr><tr><td>7호</td><td>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td></tr><tr><td>8호</td><td>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td></tr><tr><td>9호</td><td>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td></tr></table>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table><tr><th>종류</th><th>임용 등급</th><th>자격기준</th></tr><tr><td rowspan="5">시간 선택제 임기제</td><td>가급</td><td>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td></tr><tr><td>나급</td><td>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td></tr><tr><td>다급</td><td>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td></tr><tr><td>라급</td><td>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td></tr><tr><td>마급</td><td>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td></tr><tr><td>한시 임기제</td><td>5호</td><td>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td></tr></table>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급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에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급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현행

개정안

한시 임기제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교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급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의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0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1. <삭제>																																																																																								
<table><tr><td>직렬\계급 직류</td><td>계급 직류</td><td>5급이상</td><td>67급</td><td>89급</td></tr><tr><td>행정</td><td>운수</td><td colspan="3">(생략)</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직렬\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생략)			...					<table><tr><td>직렬\계급 직류</td><td>계급 직류</td><td>5급 이상</td><td>67급</td><td>89급</td></tr><tr><td>행정</td><td>운수</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사서</td><td>사서</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속기</td><td>속기</td><td>한글속기 1급</td><td>한글속기 1·2급</td><td>한글속기 1·2·3급</td></tr><tr><td>공업</td><td>일반 기계</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식품위생</td><td>식품 위생</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 rowspan="2">위생</td><td>위생</td><td></td><td>위생사 영양사</td><td>위생사 영양사</td></tr><tr><td>사역</td><td></td><td>영양사</td><td>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td></tr><tr><td>간호</td><td>간호</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간호 조무</td><td>간호 조무</td><td></td><td></td><td>간호조무사</td></tr><tr><td>시설</td><td>...</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방송통신</td><td>...</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조리</td><td>조리</td><td></td><td>조리사 1급</td><td>조리사 1급</td></tr><tr><td>운전</td><td>운전</td><td></td><td></td><td>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td></tr></table>					직렬\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 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현행과 같음)			사서	사서	(현행과 같음)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 기계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	식품 위생	(현행과 같음)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간호	간호	(현행과 같음)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시설	...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	...	(현행과 같음)			조리	조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직렬\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생략)																																																																																											
...																																																																																													
직렬\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 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현행과 같음)																																																																																											
사서	사서	(현행과 같음)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 기계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	식품 위생	(현행과 같음)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간호	간호	(현행과 같음)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시설	...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	...	(현행과 같음)																																																																																											
조리	조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생략)					비 고 : (현행과 같음)																																																																																								
2. 기능직공무원					<삭 제>																																																																																								
<table><tr><td>직렬\계급 직류</td><td>계급 직류</td><td>기능 67급</td><td colspan="2">기능8급이하</td></tr><tr><td>토 목</td><td>토 목</td><td>(생략)</td><td colspan="2"></td></tr><tr><td>...</td><td></td><td></td><td colspan="2"></td></tr></table>					직렬\계급 직류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토 목	토 목	(생략)			...					<삭 제>																																																																									
직렬\계급 직류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토 목	토 목	(생략)																																																																																											
...																																																																																													
비 고 :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별표 10]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의2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table><tr><td>구분</td><td>67급</td><td>89급</td></tr><tr><td>가산대상 자격증</td><td colspan="2">(생략)</td></tr><tr><td>가산비율</td><td colspan="2"></td></tr></table>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table><tr><td rowspan="2">구분</td><td>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td><td>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td></tr><tr><td colspan="2">(생략)</td></tr><tr><td>가산비율</td><td colspan="2">(생략)</td></tr><tr><td colspan="3">(생략)</td></tr></table>	구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생략)		가산비율			구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생략)		가산비율	(생략)		(생략)			[별표 10]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5조의2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table><tr><td>구분</td><td>67급</td><td>89급</td></tr><tr><td>가산대상 자격증</td><td colspan="2">(현행과 같음)</td></tr><tr><td>가산비율</td><td colspan="2"></td></tr></table>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table><tr><td rowspan="2">구분</td><td>67급, 연구사, 지도사</td><td>89급</td></tr><tr><td colspan="2">(현행과 같음)</td></tr><tr><td>가산비율</td><td colspan="2">(생략)</td></tr><tr><td colspan="3">(생략)</td></tr></table>	구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현행과 같음)		가산비율			구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현행과 같음)		가산비율	(생략)		(생략)		
구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생략)																																								
가산비율																																									
구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생략)																																								
가산비율	(생략)																																								
(생략)																																									
구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현행과 같음)																																								
가산비율																																									
구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현행과 같음)																																								
가산비율	(생략)																																								
(생략)																																									
[별표 1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의2 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table><tr><td>직렬</td><td>직류</td><td>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td><td>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td></tr><tr><td></td><td></td><td>...</td><td></td></tr><tr><td>방송통신</td><td colspan="3">(생략)</td></tr><tr><td>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td><td colspan="3">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td></tr></table> 비고 : (생략) <신설> 나. 연구·지도직(생략)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방송통신	(생략)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별표 1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5조의2 관련) 가. 6급이하 <table><tr><td>직렬</td><td>직류</td><td>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td><td>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td></tr><tr><td></td><td></td><td>...</td><td></td></tr><tr><td>방송통신</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 colspan="4"><삭제></td></tr></table> 비고 1. (현행과 같음) 2.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현행과 같음)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방송통신	(현행과 같음)			<삭제>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방송통신	(생략)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방송통신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 12]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12]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6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 직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기능직 6급 이상 연구사 지도사	7급· 기능직 7급 이상 연구사 지도사	8급· 기능직 8급	9급· 기능직 9급 이하	직무 분야	임용예정 직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찰 공무원	(생략)									경찰 공무원	(현행과 같음)										
		...										...									
[별표 14]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14]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 관련)												
계급	2급	3급	4급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연구경력	10년	8년	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5]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15]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 관련)												
계급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구분	계급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경력	8년				4년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후 연구경력임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현행

개정안

[별표 18]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직의 상당계급표(제26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생략)				
기능직공무원		기능 6급이상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이하
경찰공무원	(생략)				
...					
별정직공무원	(생략)				
고용직공무원					고용직
계약직공무원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신설					

[별표 19]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8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기업행정	(생략)		
...			
신설			

[별표 18]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제25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삭제>						
경찰공무원	(현행과 같음)					
...						
별정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가급” 으 로 제직 한 기간	“나급” 으 로 제직 한 기간	“다급” 으 로 제직 한 기간	“라급” 으 로 제직 한 기간	“마급” 으 로 제직 한 기간
	한시	“5호” 로 제직 한 기간	“6호” 로 제직 한 기간	“7호” 로 제직 한 기간	“8호” 로 제직 한 기간	“9호” 로 제직 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 군 20호봉 이하	“나” 군 24호봉 이상	“나” 군 23호봉 이하	“다” 군 25호봉 이상	“다” 군 24호봉 이하	

[별표 19]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7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기업행정	(현행과 같음)		
...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현행	개정안			
	토목운영		기술사(토질 및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 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 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현행	개정안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현행	개정안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해양 운영 선박해양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현행	개정안			
	<table><tr><td>보건운영</td><td>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td><td>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td></tr></table>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3. (생략)

4. 기능직

구분 직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토 목	(생략)	
...		

비고: 영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

2.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 단순화(6종→4종)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규칙 위임사항 신설 및 기존 조문 정비를 위하여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전부 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경력경쟁임용시 자격증·근무경력·학위기준 신설(제16조제8항, 별표6의2 신설)
- 나. 전문경력관 직위의 직무내용 다양성을 고려,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함(제16조제9항)
- 다.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응시자격 관련 특례규정 신설(제20조제5항 및 제6항)
- 라. 기능직 폐지 및 직렬 신설(운전, 방호, 위생, 간호조무, 조리, 시설관리, 속기)에 따른 일반직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제16조)
- 마.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자격증을 일반직 자격증에 통합(별표 5)
- 바. 신설직렬을 반영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개정(별표4)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3월 18일

고양시 규칙 제894호

고양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고양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인적자원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팀 장 직위·성명	인적자원팀 이 종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고 경 진 8075-2388

고양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

☐ 폐지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2013. 12. 12. 시행)
- 이에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내용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고상위 규칙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고양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시행규칙 폐지”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3월 18일

고양시 훈령 제30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양시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의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 및 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시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③ 구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시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 ⑤ 구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간 인사운영계획 등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5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승진

제6조(기본원칙) 소속기관의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6급 이상 승진후보자명부는 시장이 작성

관리하며, 7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는 부시장이 작성 관리한다

제8조(승진임용 방법)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서열에 따른 법정배수 이내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전문성, 창의성, 헌신성, 자발성, 징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부터 제11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별 평정자와 확인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전보

제10조(전보의 원칙)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의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서 또는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특수분야 근무자관리) 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중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장기근무(승진 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분야 범위는 전산 도시계획, 지적, 환경, 중장기계획 관련 계속사업업무 등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12조(구간 전보) ① 시장은 행정조직의 활력과 능률제고를 위하여 구간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사조정을 건의 할 수 있다.

제13조(결원보충)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시 하급기관 공무원 중에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결원은 구·동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의 결원은 동주민센터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뽑아 임용하되 업무처리 능력, 업무의 성질,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임용한다. 단, 징계요구 중이거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다른 기관 공무원 전입은 자체승진 대상자 및 신규임용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고 연고지 근무희망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장 임용기준

제14조(임용기준 및 인사청탁 배격) ①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본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청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탁사항을 내부통신망에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시기·예고 등) ① 공직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임용(승진, 전보, 전출입 등)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정기인사를 실시하여 인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기인사는 연간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직제의 신설·통합·폐지 등 인사운영상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기인사의 시기, 인사기준 등을 사전에 예고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의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 이를 내부통신망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의 배치 및 교육) ①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구·동에 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1. 구·동에 결원이 없는 경우
2.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신규임용후보자에게는 사전에 도 단위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직관리

제17조(순환보직 및 희망보직제) ①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 특성상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정기인사 전에 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조사하거나 부서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사 및 추천결과를 내부통신망에 공표하고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보직관리기준) ①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는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에 따라 "별표 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기술직렬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상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부서)으로의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수 직렬 중 업무특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따른 경징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나. 공금의 횡령·유용

다. 음주운전, 성범죄·성희롱

라. 그 밖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 등

④ 6급 공무원 중 제3항제2호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법 제71조에 따른 징계처분기간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팀장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 중 무보직인 사람을 팀장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6급 무보직 보직부여 순위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제18조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9조(전문직위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지방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등

제20조(평가지기) ① 근무실적평가는 정기평가, 최종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평가는 정기평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의 종료 또는 연장을 하기 전에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임용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용약정기간 (약정기간 연장 시 연장 전 채용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실적 평가방법) ① 근무실적평가는 임기제공무원 본인이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자의 소속부서장이 1차 평가를 실시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인적자원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팀 장 직위·성명	인적자원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문 식 031-8075-2386

[별표 1]

보직경로(제18조 관련)

직 급 별	단 계 별			비 고
	1단계보직	2단계보직	3단계보직	
5급 (직대포함)	· 동장	· 사업소장 · 구청장	· 본 청 담 당 관 및 과장 · 의 회 사 무 국 전문위원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단계별 보직을 변경할 수 있음
6급	· 동민원복지팀장	· 구청팀장	· 본청팀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 사업소에서는 2단계 보 직을 생략할 수 있음
7급 이하	· 동주민센터	· 구청	· 본청 · 의회 사무국 및 사업소	· 8급의 경우 1단계 보직 을 생략할 수 있음

성 과 목 표 평 가 서 (제21조 관련)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채용구분	성 명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평 가 기 간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임기제 공무원이 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단위목표	②성과측정 기준	③추진일정	④업무비중(%)	목 표 달 성 도 평 가			
				⑤본인평가 (%)	⑥직근 업무감독 자 평가(%)	⑦근무실적평정 위원회평정(%)	⑧실 적 가 감 점
A)							
B)							
C)							
D)							
				⑨최종 평정점(⑦+⑧)			

-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 ⑤ 본인평가 : 임기제 공무원이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함
- ⑥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 직근 업무감독자가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 ⑦ 근무실적평정위원회 평가 : 본인 평가 및 직근 업무감독자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 ⑧ 실적 가감점 : 채용기관의 장이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 ⑨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정점의 합계 + 실적이감점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고양시 인사관리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양시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보조관리 및 기타 인사운영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구의 신설·폐지·분합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임용권을 시장이 행사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인사위원회(구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 및 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② 시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신 설>	③ 구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④ 시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 설>	⑤ 구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의 증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임용시험의 실시 2.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담당에 속하는 사항 <신설> <신설>	제4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6 <삭제> 1. 연간 인사운영계획 등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5조(기밀유지) 위원을 포함한 간사, 서기 및 당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은 시장(구청장)이 공식발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원칙) ① 상위직 결원시 보충은 소속직원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결원증원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타기관 소속공무원을 전출입 동의절차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력의 균형배치와 기관간의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와 구, 구와 구간의 승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본원칙) ①~② <삭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7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관리) ① 지방4급 내지 6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시장이 통합작성 관리하며, 7급 내지 8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본청 및 사업소라 한다)와 소속공무원은 시장이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속공무원은 구청장이 작성 관리한다. ② 구청소속 지방4급 내지 6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7급이상)중 명부조정 사유(의원면직, 교육, 징계등)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즉시 증빙 자료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7급 내지 8급에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관리하되 그 부분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신설></u> 제8조(승진방법) ① 지방4급 및 6급이하의 승진은 현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한 법정배수범위안에서 승진대상자를 일괄심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로 선발된자는 승진발령 전까지 비 공개로 관리한다.	소속기관의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①~③ <u><삭제></u> 6급 이상 승진후보자명부는 시장이 작성 관리하며, 7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는 부 시장이 작성 관리한다. 제8조(승진임용 방법) ①~③ <u><삭제></u>

현행	개정안
③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자와 승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기간내에 승진임용할 수 없다. 1. 근무성적이 당해 기간내에 "가" 평점을 받은자 2. 공사생활에 흠결(공익저해, 윤리성, 품위손상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기타 승진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제9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가감점부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확인자는 평정요소평정결과(평정요소 평정점)를 실적, 능력, 태도별로 "별표 2"의 근무성적평정 가감점부여기준에 의거 각각 5점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 가감점은 자기진술서 기재항목등을 참고하여 부여한다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서열에 따른 법정배수 이내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전문성, 창의성, 헌신성, 자발성, 징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 부터 제11조의 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② 시장은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별 평정자와 확인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u><신 설></u>	제14조(임용기준 및 인사청탁 배격) ①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본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청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탁사항을 내부통신망에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u><삭 제></u> 제15조(인사시기·예고 등) ① 공직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임용(승진, 전보, 전출입 등)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정기인사를 실시하여 인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기인사는 연간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직제의 신설·통합·폐지 등 인사운영상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기인사의 시기, 인사기준 등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의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 이를 내부통신망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임용제한) 승진·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시켜야 한다. <u><신 설></u>	

현행	개정안
제17조(임용후보자의 신규임용) ① 임용후보자의 신규임용은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청의 수습기간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신규임용하는 자의 숫자가 동의 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청(구본청포함)및 사업소에 임용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장기간 계획되는 때에는 임용후보자반교육 또는 실무수습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의 배치 및 교육) ①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구·동에 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1. 구·동에 결원이 없는 경우 2.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신규임용후보자에게는 사전에 도 단위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순환보직)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보직은 취약부서 근무자중 장기근속자를 우선하여 전보한다. 이 경우 취약부서라 함은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청" 등급 업무부서로를 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약부서 근무자를 또다른 취약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신설>	제17조(순환보직 및 희망보직제) ①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 특성상 필요로..... ② <삭제> ③ <삭제> ② 임용권자는 정기인사 전에 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조사하거나 부서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사 및 추천결과를 내부통신망에 공표하고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9조(보직관리기준) 지방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는 담당직무의 범위 책임도와 곤란도에 따라 "별표 3"의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정 시행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보직관리기준) ①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는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에 따라 "별표 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기술직렬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상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부서)으로의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수 직렬 중 업무 특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따른 경징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나. 공금의 횡령·유용 다. 음주운전, 성범죄·성희롱 라. 그 밖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 등 ④ 6급 공무원 중 제3항제2호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법 제71조에 따른 징계처분기간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팀장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의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이후에 보수조정등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용약정기간(약정기간 연장 시 연장 전 채용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실적평가서) ① <신설> 근무실적평가서는 "별표4"와 같다.	제21조(근무실적 평가방법) ① 근무실적평가는 임기제공무원 본인이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자의 소속부서장이 1차 평가를 실시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제23조(평가자와 확인자)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소속과장이 되고 확인자는 소속국장(사업소의 경우 업무지도실국장)이 된다.	<삭제>
제24조(근무실적평가점) 근무실적평가의 총점은 14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7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삭제>
제25조(근무성적평가의 공개제한) 근무실적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삭제>
제2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고양시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	<삭제>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6종→4종)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정 제명 개정
 -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 고양시 인사관리 규정
- 인사위원회(구 인사위원회 포함)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 반영(제3조)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 관한 사항 반영(제7조)
-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임용기준 및 인사청탁 배격에 관한 사항 반영(제14조)
- 예측가능하고 안정적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기 및 예고에 관한 사항 신설(제15조)
- 개인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보직부여를 위한 희망보직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17조)
-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팀장 보직 제외 등 보직관리 기준 마련 및 6급 무보직 공무원의 팀장직위 부여 기준 신설(제18조)
-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19조)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3 월 18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6종→4종)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기존 조문 상의 근거 법령 오류 및 어렵고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
- 성희롱과 관련한 징계의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관련 비위행위자의 징계를 강화하며,
- 유사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과 중복중첩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별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폐지(안 제2조제1항·별표1·별표2 개정, 별표1의3 폐지)
- 나. 근거 법률 적용 오류 조문과 어렵고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여 규칙

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의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 강화를 통한 척결을 위해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5조제1항)

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 개편으로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부 직종이 신설(전문경력관 등)되어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의2)

마. 유사 내용을 중복하여 나열·기재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통합 [안 (별표 1의3) 폐지]

바.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위행위 시의 구체적 피해발생 내용에 사망사고 기준을 추가하여 일반 인적피해사고와 구분 행위의 경중에 따른 양정 기준을 정립하고자 신설[안 (별표 2) 개정]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년 4 월 7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인적자원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8075-238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누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7조, 제8조제2항 중 “징계 등”을 “징계 등”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제4조, 제8조 제목 및 본문의 “징계의결 등”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동일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하고, “행위자”를 “비위행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와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1단계”를 “한 단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의 “자가”를 “사람이”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등”으로, “2 단계”를 “두 단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를 삭제하고 “사실을 명시하여야”를 “사유를 밝혀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경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분”를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시하고”를 “밝히고”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인적자원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팀 장 직위·성명	인적자원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정 훈 031-8075-2387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 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급횡령	파면			
나. 공급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u>파면-해임</u>	<u>해임-강등</u>	<u>정직-감봉</u>	<u>감봉-견책</u>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 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2.2.17>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금품·향응수수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이상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시 : 해임이상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라. 접대성 성매수							
1) 접대성 성매수 1회		○					
2)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품위손상 등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금 등 횡령		○						
나. 공금 등 유용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다. 업무상 배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사. 음주운전								횡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 (무면허 또는 신분은폐, '중상해'의 인적피해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 면허정지(0.05%~0.10%미만) 1회							○	
2) 면허취소(0.10%이상) 1회						○		
3)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2회					○			
4)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3회			○					
5)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6)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			
7)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2회			○					
8)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사망사고 발생			○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9)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아.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2) 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			
2)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 태에서의 운전						○		
차.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1) 공무시간 중인 경우						○		
2)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							○	
카. 성 관련 범죄행위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		○						
2) 성 폭력, 강제추행			○					
3) 성매매					○			
4) 성희롱, 간통						○		
타. 상해 및 폭행, 협박 등						○		
파. 절도, 사기 등 형사범죄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		
2) 강도 등		○						
하. 도박 등 사행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3.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	
나.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	
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					○		
바.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	
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					○		
아.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4.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			
나.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 (월 3회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 행위					○		
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	
마.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						○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과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중요 비밀누설·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 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누설·유출						○	
6. 공문서 관리							
가. 공문서 위조·변조		○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			
7. 소송수행 관련							
가.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	

○ 비 고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 결과를 기록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u>정도 및 과실의 경중</u>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u>징계부가금기준</u>,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u>정도, 과실의</u>.....<u>징계부가금 부과</u> 기준, 별표 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②.....<u>「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에 따른 성폭력 범죄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생략) 1.~2. (생략)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u>기타</u> : 별표 1 적용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u>그 밖의 사항</u> : 별표 1 적용

현행	개정안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생략)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 4. (생략)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와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광역시장·도지사 이상 3.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인사위원회는 <u>징계의결</u>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u>생긴 것으로</u>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u>2 이상</u>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u>1단계</u>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u>징계의결</u>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u>2단계</u>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u>1단계</u>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u>그 사실을</u> 명시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의 경우</u>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② 징계의결 등이<u>발생된 것이</u> 제6조(징계의 가중) ①..... <u>둘 이상</u>의 <u>한 단계</u> ② 징계의결 등이 <u>두 단계</u><u>한 단계</u> 제7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u>그 사유를</u> ② <u>제1항에 따라</u>.....

현행					개정안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인 경우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u>별표1의 3과 같음</u>				라. 음주운전	<u>파면-해임</u>	<u>해임-강등</u>	<u>정직-감봉</u>	<u>감봉-견책</u>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삭 제〉	
유형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5.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현 행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사. 음주운전							횡수산정 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결과 기간에 따라 가감 (무면허 또는 신분은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 면허정지(0.05%~0.10%미만) 1회					○		
2) 면허취소(0.10%이상) 1회						○	
3)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2회				○			
4)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3회		○					
5)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6)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			
7)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2회		○					
8)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			
9)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					
아.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인명피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						○	
2)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		
3) 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횡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개 정 안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사. 음주운전							횡수산정 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결과 기간에 따라 가감 (무면허 또는 신분은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 면허정지(0.05%~0.10%미만) 1회						○	
2) 면허취소(0.10%이상) 1회					○		
3)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2회				○			
4)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3회		○					
5)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6)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			
7)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2회		○					
8)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				
9)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					
아. 교통사고							
1)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		
2) 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			○		

○ 비 고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 음주운전 횡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며 징계 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 결과를 기록한다

고양시 고시 제2014 - 84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3.18.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500번길 141-8 외 3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3.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5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500번길 141-8	20100126	서오릉로 시점에서 5000미터에 위치한 도로	2011.7.29. 고시누락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7-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415번길 256-29	20111222	흥도로 시점에서 4150m에 위치한 도로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 13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수골1로 35	20000727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96-6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401-9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6-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평안1로 107	20000727	평안한 마을이라는 의미의 도로명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6-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평안1로 59	20000727	평안한 마을이라는 의미의 도로명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6-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2로 30	20000727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6-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평안1로 103	20000727	평안한 마을이라는 의미의 도로명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6-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평안1로 117	20000727	평안한 마을이라는 의미의 도로명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2-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2로 26	20000727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2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가골길 6-30	20000727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17-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116-12	20090911	광역도로로서 일영유원지로 이어지는도로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1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116-10	20090911	광역도로로서 일영유원지로 이어지는도 로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88-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27-15	20090911	군부대 인근의 도로로 화랑의 높은 기개 를 도로명에 적용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481-20	20100126	옛 포구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4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47번길 177	20100126	용두로 시점에서 470m에 위치한 도로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488- 14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4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96-50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25-3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47번안길 118-4	20100126	용두로121번길 안쪽에 위치한 도로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봉산로 304-39	20000727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4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146	20090911	보광사를 지나가는 도로로서 지명을 도 로명에 적용	
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산 4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546번길 16-16	20100126	화랑로 시점에서 4500m에 위치한 도로	
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36- 73	20090911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로로서 고양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8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278번길 177-12	20100126	흥도로 시점에서 2780m에 위치한 도로	
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672-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11번길 7-3	20100126	고골길 시점에서 110m에 위치한 도로	
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산 1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413-3	20090911	옛군청이 위치한 곳으로 관아를 지칭하 는 말을 도로명에 적용	

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7-5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벽절길 302-122	20090911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38-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벽절길 282-39	20090911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2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336-13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상석동 1377-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25-6	20100126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54-29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1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76-1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99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266번길 147-72	20100126	송산로 시점에서 2660m에 위치한 도로	
3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919-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334번길 161-37	20100126	송산로 시점에서 3340m에 위치한 도로	
3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44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37번길 102-3	20100126	대화로 시점에서 370m에 위치한 도로	
3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44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37번길 102-9	20100126	대화로 시점에서 370m에 위치한 도로	
3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6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64-30	20100126	송포로 시점에서 1130m에 위치한 도로	
3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울길42번길 13	20100126	산울길 시점에서 420m에 위치한 도로	
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860-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이산포길 386-28	20090911	이산포IC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 월 18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500번길 141-8 외 1 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3.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5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00-9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500번길 141-8	2014.3.18.	법정동 착오등록 및 등록전환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3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2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3로 4	2014.3.18.	관련지번 변경	

고양시 고시 제2014-86호

고양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세부운용지침 중 개정지침

고양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세부운용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 3. 18.

고 양 시 장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비기준단가 (제5조 관련)

(원/㎡)

도 로	상하수도	공 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광 장
104,281	23,171	150,564	24,693	24,693	109,298

주차장	교 량	하 천	고가차도	지하차도	부대비용
23,433	2,260,143	36,404	4,644,993	5,230,759	분담공사비 총액의5%

※ 부대비용은 설계용역비, 부대공사비, 기타 제경비 등임.
상하수도공사비기준면적=신청부지면적×(1+ 사업지구 공공기반시설분담비율)×분담계수
공공시설용지 분담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분담하여야 함.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고양시 고시 제2013-170호(‘13. 6. 4.)의 “개발계획 및 세부운용지침”은 폐지한다.

고양시 공고 제2014-4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6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1. 우리시 덕양구 성사동 196-5번지 일원에 공사과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3-62호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정측량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031-8075-4392) 및 도시정비과(☎ 031-8075-314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8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96-5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중로3-62호선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 정	중로	3	62	12~27	3,352.00		
금회시행	중로	3	62	12	327.57	5,376	당초
						4,858	변경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시청로10
 - 성명 :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13.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6. 30.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변경없음)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항과 동일(변경없음)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면 적 (m2)	편 입 면 적 (m2)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 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	성사동	196-3	도	484.0	138	남수현		성사동 196-9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2	성사 동	185-2	도	670	342	김인자		대전시 서구 도마동 409-9 대아@104-604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3	성사 동	196-9	대	258	1	남수현		성사동 196-9	압류	종로구	종로구	기정	
				258	0							변경	편입 제외
4	성사 동	185-1 0	도	431	26	김인자		대전시 서구 도마동 409-9 대아@104-604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5	성사 동	196-7	도	3	4	장석영		성사동 199				기정	
					3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면적변 경
6	성사 동	196-6	답	558	2	최준식		서울 은평구 증산동 158-23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7	성사 동	195-2	도	258	258	김인자		대전시 서구 도마동 409-9 대아@104-604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8	성사 동	195-3	답	502	34	장석태		성사동 193				기정	
					0							변경	편입 제외
9	성사 동	190-1	전	767	358	신태식		성사동 726 신원당마을 804-601	근저당	원당농 협	주교동 603-20	기정	
					354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면적변 경
10	성사 동	190-2	도	440	440	김인자		대전시 서구 도마동 409-9 대아@104-604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11	성사 동	190-3	답	2,208	3	장석태		성사동 193-2				기정	
					0							변경	편입 제외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면 (m2)	편 입 면 (m2)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 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2	성사 동	189-3	전	4,893.0	669	장기향	132 2 /48 93	관산동542 신세대빌라비-2 02	근저당	원당농 협	주교동 603-20	기정	
						장기현	357 1 /48 93	성사동 203				기정	
					207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면적변 경
13	성사 동	189-2	도	536.0	536	장홍		성사동 205					
14	성사 동	190-4	도	271.0	271	김인자		대전시 서구 도마동 409-9 대아@104-604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15	성사 동	190-5	전	132	80	장기현		성사동 404-28 미미아파트 가-102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16	성사 동	191-2	도	60.0	60	장석고	1/4	성사동 149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장석형	1/4	서울 마포구 연남동 229-71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장석조	1/4	성사동 205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장순희	1/4	덕양구 행신동 895 햇빛마을 1812-802				기정	
17	성사 동	188-3	전	2,926	174	남광진		성사동 243-4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면 적 (m2)	편 입 면 적 (m2)	소 유 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			비 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8	성사 동	188-2	도	278	145	장석지		성사동 165				기정	
					151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면적변 경
19	성사 동	670	도	3,139.0	166	국		건설부					
20	성사 동	168-1	도	20	20	정용현		경성부 봉악정 101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21	성사 동	168-2	답	774	50	김용대		성사동 167				기정	
					51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면적변 경
22	성사 동	169-3	도	69	69	정용현		경성부 봉악정 101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23	성사 동	167-3	도	112.0	106	국		건설부					
24	성사 동	167-4	도	30.0	30	국		건설부					
25	성사 동	169-7	답	823	459	김용대		성사동 167				기정	
					446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면적변 경
26	성사 동	169-4	도	13	13	정용현		경성부 봉악정 101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27	성사 동	169-5	도	324	324	정용현		경성부 봉악정 101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28	성사 동	169-6	답	96	96	김용대		성사동 167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29	성사 동	169-8	도	169	169	정용현		경성부 봉악정 11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30	성사 동	171-2	도	56	56	고양시							
31	성사 동	171-1	대	399	10	박제원		성사동 166-3	근저당	원당농 협	주교동 603-20	기정	
					0							변경	편입 제외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면 적 (m2)	편 입 면 (m2)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 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 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 소		
32	성사 동	172	답	1,689	49	이정희	1/6	안산시 선부동 993-16				기정	
						이정석	1/6	덕양구 주엽동 12 문촌마을 805-902				기정	
						이정미	1/6	행신동 796 소만마을 101-306	근저당	원당농 협	주교동 603-20	기정	
						이정란	1/6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441	근저당	원당농 협	주교동 603-20	기정	
						이정선	1/6	파주시 금촌동 1003 소재마을 513-403	근저당	원당농 협	주교동 603-20	기정	
						이정순	1/6	덕양구 관산동 190-4 허스맨션 라-305				기정	
					50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면적변 경
33	성사 동	142-1	전	46	44	정임식		성사동 144-1				기정	
						고양시						변경	소유자 변경
34	성사 동	142-2	도	1,485	173	고양시							
35	성사 동	141-1	전	56	1	장기유		성사동 199					
36	v	189-8	답	2	2	고양시						변경	추가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단 위	수 량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계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비 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성사 동	190-1	비닐 하우 스		m²	194		신태식	성사동 726 신원당마을 804-601				기정	
						0							변경	철거
2		188-2	비닐 하우 스		m²	11		장석지	성사동 165				기정	
						0							변경	철거
3		188-3	컨테 이너	3.5*6. 3	m²	20		남광진	성사동 243-4				기정	
						0							변경	철거
4		142-1	비닐 하우 스		m²	11		정임식	성사동 144-1				기정	
						0							변경	철거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 2014-125호

공 고

고양시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한 공인을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공인명 : 민원사무고양시일산동구장항2동장인전용
2. 신조 사유 : 인증기 1대 구입에 따른 공인 제작
3. 신조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4. 03. 31.
4. 신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cm×cm)	인영
신조	민원사무고양시일산동구 장항2동장인전용	훈민정음체 (2.1×2.1)	

2014. 03. 18.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